

2006. 7.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리·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리·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6.7.5	2006.7.7	2006.7.13	2006.7.13	총무과장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기획감사과장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"
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"	"	"	"	주민자치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리·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리·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중인 장학금지급조례 중 변경된 교육시책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장학금 지급의 수혜범위 확대(안 제2조)
- 장학생의 자격을 중·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(안 제2조)
※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로 대상에서 제외함
- 장학생 선발을 연1회에서 2회로 변경(안 제4조)

나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화장장, 납골당 등 장묘시설 건립에 따라 시설운영기구를 신설하고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업도시지원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기업도시지원단의 기능보강 및 명칭 변경(안 제17조)
 - 명칭변경 : 기업도시지원단 ⇒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
- 장묘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분장사무 명시

다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장묘시설관리소의 신설 및 시립도서관 확장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민선시장에게 채용 권한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총수 13명 증원 : 1,304명 ⇒ 1317명(안 제2조)
 - 일반직 9명(5급 1명, 6급 2명, 7급 1명, 8급 2명, 9급 3명)
 - 기능직 4명(7급 1명, 9급 2명, 10급 1명)

※ 증원승인 : 장묘시설관리소 8, 도서관 5
- 행정기구별 인력조정
 - 지역개발과 △6, 사회복지과 △1, 문화체육과 △1
 - 장묘사업소 9, 시립도서관 5,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6, 주덕읍 1
- 직종 조정 : 행정7급 △1 ⇒ 별정 6급 1(비서실)

라.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및 시행령 제정 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「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-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⇒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
- 자원봉사활동의 범위(안 제3조)
-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5조 내지 제13조)
- 자원봉사활동의 진흥(안 제14조 내지 제20조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리 ·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리 · 통장 자녀 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 ·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
- 당초에는 중 · 고등학생이 지급대상이었으나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중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
- 제1조에 종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리 · 통장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'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'를 삭제함으로써 리 · 통장 자녀 모두가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

- 또한 년1회 학년초에 실시했던 장학생 선발을 년2회 선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직기간(1년) 부족으로 지금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리·통장 자녀들에 대하여도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임
-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변경된 교육시책을 반영하면서 리·통장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나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장묘시설관리소는 오는 7월말 준공예정인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장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하는 행정기구라 판단됨
- 기업도시지원단의 기능보강 및 명칭변경 사항은,
 -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「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」로 설치된 '기업도시지원단'의 기능에 기존 지역개발과 소관인 첨단산업단지 업무를 이관시키고
 - 이에 따라 명칭을 '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'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임
 - 본 개정사항은 지난번 '기업도시지원단' 설치와 관련한 검토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 상호간에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하고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했어야 하며
 - 또 기업도시지원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행정기구를 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됨
 - 더욱이 업무가 일부 유사·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'투자유치지원실'과 경제과의 '기업지원담당' 등에 대한 업무조정 등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

다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장묘시설관리소의 신설 및 도서관 증축 등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는 한편, 앞서 설명 드린 '기업도시지원단'에 첨단산업단지업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임
- 시립도서관은 5개 열람실과 시청각실, 전시실, 디지털자료실 등 1,680평을 신축, 종전보다 3배정도 규모가 커졌으나
- 운영인력은 종전과 변동 없이 11명이 그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인터넷 민원 폭증 등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
- 본 시립도서관의 인력증원은 개관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판단됨
- 7월 말 준공예정인 화장장과 납골당의 운영을 담당할 장묘시설 관리소는 신규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사료되며
-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인력증원은 첨단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의 첨단입지담당과 첨단시설담당을 이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
- 그 외에 문화체육과, 사회복지과의 정원 조정은 기구조정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조치이며
- 별정직 정원조정은 민선시장이 정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하겠음

라.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

- 본 조례는,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음
- 안 제2조 정의,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, 제4조 권장·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며,
- 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음
-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임
- 본 조례는 새로 제정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리·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“없음”

나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시장실에 두는 별정6급은 지휘계통의 지시를 받는가?

○ 답변 : 받아야 함

▶ 질의 : 정치적인 영향은 없는가?

○ 답변 : 타 시군에 따르면 큰 영향이 없고 수행비서의 역할을 하게 됨

▶ 질의 :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늘려 놓은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됨 직제조정으로 5급 자리를 늘리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?

○ 답변 : 하반기에 기구조직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임

다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“없 음”

라.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“없 음”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리 ·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- 가. 충주시리 ·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다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라.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